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를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8조제4항에서 규정한 학생수가 60명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범위에서 당해학교의 규정으로 정하고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58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제4항중 “병설학교의”를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영 제28조제5항에서”를 “영 제59조제5항에서”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9조제2항중 “제1항제8호의 학교운영등과 관련된”을 “법 제32조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중 “교감을”을 “교직원을”로 한다.

제18조중 “서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을 “간사 1인을 두되,”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